

의 장



## 입법담당관 관련 규정 일부개정 발령 계획

- 「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-



2019. 9.

No-304



서울시의회사무처  
(입 법 담 당 관)

# 입법담당관 관련 규정 일부개정 발령 계획

## - 「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-

임기를 마친 '전직 서울시의원'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정식 이용 권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아울러 도서관 관리 원칙에 대한 근거 마련과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# I 개정 사유

- '전직 서울시의원'이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자료를 이용(열람 및 대출)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
- 도서관 자료 관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
- 맞춤법, 용어의 적합성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

### II 주요 개정내용

- 도서관 이용자 범위에 '전직 서울시의원'을 신설하고, 이용자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규정함.(안 제15조)
- 도서관 열람·대출시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을 현행화하여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로 규정함.(안 제16조) 09.24
- 개정 안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 대출범위도 새롭게 규정하고, '전직 서울시의원'을 신설함.(안 제18조)
- 제20조 관외대출 내용을 안 제18조 대출범위에 통합하여 규정하고, 제20조는 삭제함.(안 제18조)
-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 관리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9조 ②항 신설)
- 규정 조문의 맞춤법, 띄어쓰기, 적합성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.(안 제9조, 안 제17조, 안 제26조, 안 제28조)

### Ⅲ 추진일정

- 일부개정 규정안 발령 및 시행 : 2019. 9월 중

붙임 : 「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발령문안 1부. 끝.

2019. 09. 24  
의상

붙임

「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」  
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

2019년 9월 일

2019.09.24  
의장

#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

## 1. 개정이유

- 임기를 마친 '전직 서울시의원'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자료를 이용(열람 및 대출)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
- 도서관 자료 관리 원칙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며,
- 아울러 맞춤법, 용어의 적합성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도서관 이용자 범위에 '전직 서울시의원'을 신설하고, 이용자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규정함.(안 제15조)
- 나. 도서관 열람·대출시간의 근거가 되는 법규명을 현행화하여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로 규정함.(안 제16조)
- 다. 개정 안 제15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 대출범위도 새롭게 규정하고, '전직 서울시의원'을 신설함.(안 제18조)
- 라. 제20조 관외대출 내용을 안 제18조 대출범위에 통합하여 규정하고, 제20조는 삭제함.(안 제18조)
- 마.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 관리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.(안 제19조 ②항 신설)
- 바. 규정 조문의 맞춤법, 띄어쓰기, 적합성 등을 전체적으로 정비함.(안 제9조, 안 제17조, 안 제26조, 안 제28조)

2019. 09. 20  
의장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없음

##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은”을 “도서관 이용자는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”로 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이용자 범위)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
2. 전직 의원
3. 서울특별시 근무 직원(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4. 그 밖에 학술연구나 비영리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

제16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개회중일 때에는 의회”를 “개회 중일 때에는”으로, “사무처 공무원에 한하여”를 “의회 근무 직원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열람·대출시간은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<sup>2019.09.24</sup>조례」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열람은”을 “열람장소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자료의 대출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한정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지원이나 도서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대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.
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자료
2. 참고도서, 가제식 법령집, 연속간행물
3.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으며, 별지 제3호서식의 대출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④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의원: 30권 / 30일
2. 전직 의원: 7권 / 15일
3. 서울특별시 근무 직원: 7권 / 10일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특수자료는 다음”으로, “호의 특수자료는 열람·대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”를 “호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”를 “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수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제15조제1호의 의원이 직무상 열람 및 대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

2. 의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

제20조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(제20조 관련)”을 “(제18조제3항 관련)”으로 하고, 서식에 “대출기간” 항목을 신설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019. 09. 24  
의장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희망도서신청) <u>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</u>은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희망도서의 구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구입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9조(희망도서신청) <u>도서관 이용자</u>는 ----- ----- <u>경우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5조(이용자 범위) <u>도서관 이용자</u>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의회 의원</u></li> <li>2. <u>의회 사무처 공무원</u></li> <li>3. <u>서울특별시 공무원</u></li> <li>4. <u>정부기관, 공공단체, 연구기관, 언론기관의 임직원</u></li> <li>5. <u>각급 학교의 교수, 교사, 강사 및 대학 학위논문 작성이 필요한 사람</u></li> <li>6. <u>그 밖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</u></li> </ol>	<p>제15조(이용자 범위) <u>도서관 이용자</u>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</u></li> <li>2. <u>전직 의원</u></li> <li>3. <u>서울특별시 근무 직원(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학술연구나 비영리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</u></li> </ol>
<p>제16조(열람·대출시간) ① <u>열람·대출시간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.</u> 다만,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<u>개회중일 때에는 의</u></p>	<p>제16조(열람·대출시간) ① <u>열람·대출시간은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한다.</u> ----- ----- <u>개회 중일 때에는</u> -----</p>

24. 03. 24  
 의장

회 의원 및 사무처 공무원에 한하여 열람·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7조(열람) ① 자료의 열람은 도서관으로 한정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8조(대출범위) ① 자료의 대출은 의회 의원, 의회 사무처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.

②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 의원 : 30권 / 30일
2. 의회 사무처 공무원 : 7권 / 10일
3. 서울특별시 공무원 : 7권 / 10일

<신설>

----- 의회 근무 직원에 한정하여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열람) ① ----- 열람장소는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대출범위) ① 자료의 대출은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한정한다.

②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의정활동지원이나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대출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.

1.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자료
2. 참고도서, 가제식 법령집, 연속간행물
3. 규약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③ 제2항에 따라 대출을 허가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신청하도록 할 수 있으며, 별지 제

<신 설>

제19조(특수자료관리) ① 다음 각 호의 특수자료는 열람·대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그 밖에 대출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<신 설>

② (생 략)

제20조(관외대출) ① 사무처장은 의정활동 지원, 그 밖의 도서관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

3호서식의 대출승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④ 대출 책 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.

- 1. 의원: 30권 / 30일
- 2. 전직 의원: 7권 / 15일
- 3. 서울특별시 근무 직원: 7권 / 10일

제19조(특수자료관리) ① 특수자료는 다음 -- 호에 해당하는 도서관 자료-----.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-----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-----

② 특수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1. 제15조제1호의 의원이 직무상 열람 및 대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
- 2. 의회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열람하는 경우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삭 제>

2. 제25조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 
이후에도 회수가 안 되는 대출  
자료

제28조(자료복사) ①·② (생략)

③ 복사하고자 하는 자료가 제19  
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  
는 대출이 승인된 것에 한한다. 다  
만, 의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공  
무원이 직무상 필요시에는 그러하  
지 아니하다.

[별지 제3호서식]

관외대출승인대장

(제20조관련)

구분	일시	등록 번호	자료 명	대출자				목적
				소속	직급	성명	연락 처	

2. ----- 따른 -----  
-----  
-----

제28조(자료복사) ①·② (현행과  
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<단  
서 삭제>

[별지 제3호서식]

대출-----

(제18조제3항관련)

구분	일시	등록 번호	자료 명	대출자				대출 기간	목적
				소속	직급	성명	연락 처		

09.24  
7항